의 안 번 호	제7호
의결 연월일	2018. 3. 13.

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8년 3월 6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18년 3월 1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 마을자치회의 설치(안 제4조)

- 주민의 신청을 조건으로 시장이 설치함

2) 마을자치회의 기능(안 제5조)

- 주민총회, 공동체 현안 조정 등 마을 협의사항을 중점기능으로 함

3) 마을자치회의 구성(안 제6조)

- 10~20명으로 인원을 구성하며 마을 주요 주민을 당연직으로 하여 대표성을 확보함

4) 마을자치회의 운영(안 제11조)

-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

5) 민관협업(안 제12조)

- 행정기관의 지원사항(지원 인력, 사업비 보조) 규정
- 읍면동의 이·통장단,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업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